

예 산 총 칙

2017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합 계 | 4,393,849,183 | 131,815,475 |
| 일반회계 | 3,919,774,129 | 117,593,224 |
| 특별회계 | 474,075,054 | 14,222,252 |
| 기타특별회계 | 474,075,054 | 14,222,252 |
| 소방특별회계 | 165,345,841 | 4,960,375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225,219,682 | 6,756,590 |
|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| 12,380,005 | 371,400 |
|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| 31,402,881 | 942,086 |
|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| 9,382,890 | 281,487 |
|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| 30,343,755 | 910,313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"와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 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"명시이월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,425,934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6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